〈공무원거취제에 관한 건〉

1950.10.1

大統領秘書室專用原稿

大秘善第一號

各部處長官 貴下

政府閣員이나 國會議員을 家族으로 하여금 避難處에 있도록 하고 아직 避難處에 있지 않은 閣員에 對하여는 相當히 決定해서 以上說明한 趣意를 通知하는 것이 可할 것이나 別紙 지난 十月 一日 閣議에 決定한 바와 같이 公務員의 去就에 關한 件은 閣議決定에 依하여 處理하는 것이 可할 것으로 思料하는 바 貴下에서는 適當한 措置를 取하시기 바라며 이 點 添言하는 바입니다.

檀紀四二八三年十月一日

10.1

(10×18) 323 327